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16 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임미애 · 강유정

김재원 • 한민수 • 부승찬

박상혁 · 서영교 · 문정복

김윤덕 · 차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. 그런데 방연(防煙)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, 화재발생 시 국

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6항에"로 한다.

-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 인은 소방시설 중 방연(防煙)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할 때에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2조제1항 전단에"를 "제12조제1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2조제1항 전단에도"를 "제12조제1항에도"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2항에"를 "제12조제3항에"로 한다.

제55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2조제3항을"을 "제12조제4항을"로 한 다.

제56조제1항 중 "제12조제3항"을 "제12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57조제1호 중 "제12조제2항"을 "제12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・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・관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·관리할 때에는 「장애인·노 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 조설비를 말한다)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
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
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・관리되
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
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
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
·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
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
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
한다. 이하 같다) · 차단 등의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
만,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
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
단은 할 수 있다.
<u>④</u> 소방청장은 <u>제3항</u> 단서에
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
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
위하여 폐쇄·차단을 하는 경
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
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
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⑤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

등에 적합하게 설치・관리하여
<u>야 한다.</u>
<u>③</u>
-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<u>.</u>
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<u>제18 </u>
<u>⑤</u> <u>체4형</u>
<u>⑥</u>

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수집·분석할 수 있는 시 스템(이하 "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
⑥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<u>제5항에</u> 따른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(생 략)
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한다)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

<u>제1항 및 제2항에</u>	
·.	
<u>⑦</u>	
<u>제6항에</u>	
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	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	
례) ①	
<u>제12</u> 조제1항에	

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~ 4. (생략)
- ⑤ (생략)

제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
-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 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- 1. <u>제12조제2항에</u> 따른 소방시
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제12조제1항
<u>에도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
제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①
<u>,</u>
1. <u>제12</u> 조제 <u>3항에</u>

설에 대한 조치명령 2. ~ 6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

-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
- 2. <u>제12조제3항을</u> 위반하여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56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3항</u> 본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2조제2항, 제15조제3항,

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
1. <u>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</u>
2. <u>제12조제4항을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4항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57조(벌칙)
1. <u>제12조제3항</u>

제16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 23조제6항,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. ~ 9. (생 략)

- 제6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・관리하지 아니한 자
 ~ 15. (생략)
 - ② (생략)

2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1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<u>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</u>
O 1F /취세계 계수)
2. ~ 15. (현행과 같음)② (현행과 같음)